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민사집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압류금지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 개정이 이루어짐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또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 당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85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그 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생계비계좌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생계비 등 압류금지 금액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계비계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제7조, 제8조)

1) 생계비계좌 예치액 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액을 250만 원으로 정하되,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려는 경우 그 이자 부분에 한하여 25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입금될 수 있도록 함

2) 생계비계좌 외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범위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를 현행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등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압류가 금지된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하더라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그 외의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도록 함

3)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생계비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개설에 앞서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도록 함

나. 압류금지 금액의 상향 (안 제3조, 제6조)

- 1)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현행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함
- 2)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상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0. xx. ~ 12. xx.)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85만원을”을 “250만원을”로, “법 제246조제1항제8호”를 “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로, “185만원에서”를 “250만원에서”로 한다.

제3조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15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법 제246조제1항제8호”를 “법 제246조제1항제9호”로,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을 “금전이나 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생계비계좌)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④ 제3항의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 또는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생계비계좌의 개설·해지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제4항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정보험금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u>185만원</u> 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u>185만원에서</u>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		-----
		-----		-----
		-----		-----
		-----		<u>250만원</u>
		을 -----		법 제246조제
		<u>1항제8호 및 제9호</u> -----		-----
		-----		-----
		-----		<u>250</u>
		<u>만원에서</u> -----		-----
		-----.		-----.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u>185만원</u> 을 말한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
		-----		-----
		-----		-----
		-----		-----
		-----		<u>250만원</u> -----.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		-----
		-----		-----
		-----		-----
		-----		-----
		-----.		-----.
1. 사망보험금 중 <u>1천만원</u> 이하		1. -----		<u>1천5백만원</u> --

의 보험금 2. (생략)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 금 가. (생략)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 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u>150만원</u> 이 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u>150만원</u> 이하의 금액 ② (생략)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u>법 제246조제1항제8호</u>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 은 개인별 잔액이 <u>185만원</u> 이하 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u>금전이</u> 있으면 <u>185만원</u>에 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u><신설></u>	----- 2. (현행과 같음) 3.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u>250만원</u> ---- ----- 4. ----- <u>250만원</u>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u>법 제246조제1항제9호</u>----- ----- ----- <u>250만원</u> ---- ----- ----- --- <u>금전이나 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이</u> 있으면 <u>250만원</u>-----. <u>제8조(생계비계좌) ① 법 제246조 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 다.</u>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
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
에 예치된 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
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

고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④ 제3항의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 또는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생계비계좌의 개설·해지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제4항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	
연 락 처	(02) 2110 - 3734